

2024년 3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

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3조 및 「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」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“2024년도 울산광역시 3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” 융자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. 8. 22.

울 산 광 역 시 장

1. 융자규모 : 200억 원
2. 자금의 용도 :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
3. 신청대상 : 울산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
 - 제조업, 건설업, 운송업, 광업 :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업체
 - 도·소매업, 음식업, 서비스업 등 :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체

《지원제외》

 - 신청일 현재 시·구·군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업체
 - 신청일 현재 휴·폐업자
 -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한 업체
 - 금융·보험업,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조장 업종 및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 ※ 융자지원 제한 업종 【붙임 1】
4. 융자조건
 - 대출한도 : 8천만원 이내
 - 상환조건 : 2년거치 일시상환, 1년거치 2년 분할상환, 2년거치 2년 분할상환
 - ※ 대출기간 만료 후 만기연장은 대출자와 대출은행간 협의하여 자율결정
 - 대출취급은행 : BNK경남은행, NH농협은행, 신한은행, KB국민은행, 하나은행, BNK부산은행, 우리은행
 - ※ 대출취급은행은 은행사정 등으로 변경 가능하며, 최종사항은 접수 시 안내
 - 대출금리 : 협약은행 금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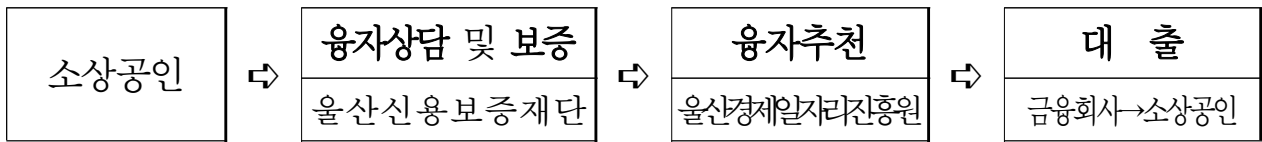
5. 우리시 지원내용 :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2~4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(2.5%이내)

구 분	2년거치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	2년 거치 2년 분할상환
1회 융자 신청업체	2.5%	1.7%
2~3회 융자 신청업체	2.0%	1.45%
4회 이상 융자 신청업체	1.5%	1.2%

※ 단, 융자 신청 후 폐업 시 이자 지원 혜택 중단

6. 지원절차

- 접수 및 신용보증서 발급 : 울산신용보증재단
 - * 보증서 발급 수수료 발생(융자금액의 0.9%)
 - * 융자지원제한업종 제외
-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신청 추천서 발급 :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
- 자금대출 : 7개 협약은행



7. 신청서 접수

- 신청기간 : **2024. 9. 19.(목) 09:00 ~ 자금 소진 시까지(온라인 선착순)**
 - ※ 보증상담 : 2024. 9. 24.(화) 09:00 이후
- 신청방법 : 울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(<https://www.ulsanshinbo.co.kr>)
온라인 신청
- 구비서류 ※ 9.19.(목) 온라인 신청 완료 후, 신용보증재단 보증상담 시에 지참
 - (공통) 사업자등록증
 - (공통) 사업장 임대차계약서
 - (법인) 법인등기부등본, 주주명부
 - (법인)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(최근 3개년)
- ※ 융자신청서 및 정보 수집 동의서는 해당자에 한함(필요시 추후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에서 연락)

8. 상담 및 문의

◦ 울산신용보증재단

- 본 점 :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3층 (☎289-2300)
 - 중울산지점 : 중구 새즈른해거리 28 농협은행 성남동지점 3층(☎212-0013)
 - 남울산지점 : 남구 봉월로 5 농협은행 공업탑지점 2층 (☎283-0101)
 - 동울산지점 :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145 미포복지회관 3층 (☎281-8100)
 - 서울산지점 : 울주군 언양읍 동문길 58 경남은행 언양지점2층 (☎285-8100)
-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: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(☎ 283-7135)
- ※ 융자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진행(울산신용보증재단 보증상담 시 안내)

붙임 1. 융자지원 제한대상 업종(현황)

[붙임 1]

용자지원 제한대상 업종

표준산업분류	업종
56211	일반 유흥주점업
56212	무도 유흥주점업
68	부동산업. 다만, '부동산관련 서비스업(682)' 및 '비주거용건물 임대업(68112) 중 해당업종 사업영위자와 사용자(소비자)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간을 대여해줘, 그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 경우로써, 공간임대 외에 추가로 재화 또는 용역(서비스)을 제공하는 경우'는 제외
91121	골프장 운영업
91291	무도장 운영업
91249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9612 중	증기탕 및 안마시술소
46102 중	담배 중개업
46209 중	잎담배 도매업
46333	담배 도매업
64	금융업
65	보험 및 연금업
66	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. 다만 손해사정업(66201), 보험대리 및 중개업(66202) 및 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(66199) 중 핀테크 관련 사업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
75993	<p>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</p> <p>다단계판매업. 다만, 「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」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(업)를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</p> <p>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·향락 등 불건전업종, 기타 국민 보건·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·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</p>

구분	한국표준산업분류	세부업종
도박 및 게임 관련	•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(33409) 중	•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
	• 장난감 및 취미, 오락용품 도매업(46463) 중	•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
	• 게임용구,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(47640) 중	•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
	•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(47911) 및 전자상거래 소매업(47912) 중	•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, 성인용품 도소매업
	•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(76390) 중	•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	•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(5821) 중	• 도박 및 사행성, 불건전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
	•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(75999) 중	•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
	•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(91113)	•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
	•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(96992)	• 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
	• 그 외 기타 정보서비스업(63999) 중	•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(63999-1)
건전 문화 관련	•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(47859) 중	• 성인용품 판매점
	•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(75330) 중	• 흥신소
	• 오락장 운영업(9122) 중	• 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
	•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(96999) 중	• 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
투기 조장	• 경영 컨설팅업(71531) 중	• 기획부동산업 ^{주)}

주) (운영형태)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(330㎡, 660㎡ 등)로 분할한 후,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(전화권유 판매)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(시세의 3~5배)에 매도하는 업체